

제 248 호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양택식

편집 : 공보실장 손왈수

전화 75-7834

1972. 6. 26.
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
시보

차 례

이 영도 택지 매각 입찰공고

필립으로

서울특별시 시민의장

◎ 규 칙

제 1223 호 서울특별시립 여자기술원 직제 3

제 1224 호 서울특별시 운수사업소 직제중 개정규칙 4

◎ 고 시

제 87 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운수사업소 위치 4

◎ 공 고

제 146 호 여의도 택지 매각 입찰공고 5

◎ 사 령

..... 8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0981

규 칙

서울특별시립여자기술원직제를 제정하
여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1972년 6월 23일

○서울특별시규칙제 1223호

서울특별시립여자기술원직제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
립여자기술원(이하 기술원이라 한
다)의 조직과 관장할 사무를 규정
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원장) ①기술원에 원장을 두
고 원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②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원내
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
휘 감독한다.

제3조(공무원) 기술원의 원장이외에
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정하는
바에 의한다.

제4조(사무장) ①기술원에 사무장을
두되 사무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.
②사무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
사무를 관장하며 원장이 사고가 있
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원장의 관장사무) 기술원장은
서울특별시립여자기술원 설치조례제 3
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업무에 대한
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

1. 인사 및 문서에 관한 사항

2. 기획 및 예산

3. 물품관리 및 원내생산품의 관리 처분

4. 수용자의 입퇴원

5. 의무실 관리

6. 수용생 후생시설관리

7. 농산물 지배 및 가축사육

8. 자활기금조성

9. 교육훈련계획수립

10. 교과편성 및 교재편찬

11. 교과운영 및 학적관리

12. 교육성과의 분석평가

13. 수용생 생활지도

14. 각종시험 및 취업알선

15. 교육실습용 차량 및 기구기재관리

16. 교회운영

17. 수용생상담

제6조(교과편성) ①기술원의 교과편성은
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초등반

2. 기술반

②초등반은 국민학교 소정의 과정에
대한 교육을 실시한다.

③기술반에 양재과, 편물과, 이용과, 미
용과, 운전과, 간호보조과와 생산과를

두어 1인1기의 기술교육을 실시한다.

④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
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
시행한다.

②(폐지규칙) 1970년 3월 24일자 시규
칙제 891호로 공포된 서울특별시립행복
원 직제는 이를 폐지한다.

서울특별시운수사업소조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 한다.

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1972년 6월 24일

◎ 서울특별시규칙제 1224호

서울특별시운수사업소조직제중개정규칙
서울특별시운수사업소조직제중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
제 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4 조 (자동차운수사업소) ①자동차운수사업소에 서무제, 업무제 1제, 업무제 2제와 정비제를 두고 서무제장, 업무제 1제장과 업무제 2제장은 지방행정주사로, 정비제장은 지방기계기사로 보한다.

②자동차운수사업소의 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 업무제 1제와 업무제 2제의 분장사무는 소장이 노선별로 지정한다.

1. 서 무 제

- 가. 문서, 판인, 기밀
- 나. 청중단속 및 당직
- 다. 인사, 복무, 급여, 후생
- 라. 기획 및 예산
- 마. 물품관리
- 바. 도서 및 비품관리
- 사. 재반 통제
- 아. 금전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
- 자. 계약 및 지출
- 차. 물품검수 및 검사 임회
- 카. 금고 및 저장품 관리

타. 주유소 관리

파. 타계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2. 업무제 1제, 업무제 2제

- 가. 운영계획 및 배차
- 나. 승무원 지도 감독 및 교육훈련
- 다. 교통사고 처리
- 라. 승차권 판매처리
- 마. 노무관리

3. 정 비 제

- 가. 자동차 정비계획의 수립
- 나. 자동차의 장비 점검
- 다. 자동차정비에 관한 물동 계획
- 라. 자동차의 수리 및 보수
- 마. 정비공의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
- 바. 폐품의 정비

제 5 조를 삭제하고 제 6 조를 제 5 조로 한다.

별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87 호

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소위원회
중부 자동차운수사업소 및 남부자동차운수사업소가 설치되고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치를 고시 한다.

1.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수사업소 위치 :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면목동 378의3
2. 폐지된 중부자동차운수사업소 위치 :
경기도 성남 단지 296구획
3. 폐지된 남부자동차 운수사업소 위
치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면목동 378
의 3

1972. 6. 24.

서울특별시장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 공고 제 146 호

여의도택지매각입찰공고
다음 표시 여의도 택지 재산을 지방
제청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일반 공
매한다.

1. 입찰장소 : 당시 재무국 입찰실
2. 등록 및 입찰일시 : 1972. 7. 5.
02:00 까지 동시에 접수함.
3. 입찰방법 : 당시 재무국 관제과에서
매부하는 입찰등록서, 입찰서, 입찰
보증금 납부서를 교부받으신 후
소정 기재사항을 기입후에 치중 (입
찰보증금) 과 같이 입찰함에 투찰
하시면 됩니다.
4. 입찰보증금 :
가. 입찰액의 1할 이상 해당하는
금액을 공고일로부터 입찰전까지
입찰자의 명의로 한국 상업은행

서울특별시금고에 예치하여야 합니
다.

나.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 보증
금으로 대체되며, 유찰자의 보증금
(예치중)은 1972. 7. 7 부터 반
환 합니다.

5. 매매계약 및 대금납부 방법 :

가. 낙찰자는 국세, 시세 납세필증과
수입인지 (10원권 6매)를 낙찰일
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고 계약
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

나. 대금 납부는 3개월간 3회 분할
납부할 수 있습니다.

다. 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
않거나 지정된 납부일에 대금을
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보증금은 당
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합니다.

6. 재산 매각후 명수에 증감이 생길
경우에는 당사가 정하는 가격으로 추
납 또는 반환합니다.

7. 도면, 열람이나 기타 상세한 것은
당시 관제과 (75-6836)에 문의하시
기 바랍니다.

8. 매각 재산의 표시 (별첨 재산목록과
같음).

1972. 6. 23.

서울특별시장

8. 재산 목록

택지명	재 산 의 표 시				평 수	택지명	재 산 의 표 시				평 수
	지구별	일	구획	호			지구별	일	구획	호	
여의도	주 거	5	16	2	145	여의도	주 거	8	1	1	126
"	"	"	"	3	145	"	"	"	"	2	150
"	"	"	"	4	145	"	"	"	"	3	150
"	"	"	"	5	145	"	"	"	"	4	150
"	"	"	"	6	145	"	"	"	"	5	150
"	"	"	"	7	155	"	"	"	"	6	150
"	"	"	"	9	110	"	"	"	"	7	146
"	"	"	"	10	110	"	"	"	"	8	96
"	"	"	"	11	110	"	"	"	"	9	100
"	"	"	"	12	110	"	"	"	"	10	100
"	"	"	"	13	110	"	"	"	"	11	100
"	"	"	17	1	155	"	"	"	"	12	100
"	"	"	"	2	145	"	"	"	"	13	100
"	"	"	"	3	145	"	"	"	"	14	96
"	"	"	"	4	145	"	"	"	2	1	146
"	"	"	"	5	145	"	"	"	"	2	150
"	"	"	"	6	145	"	"	"	"	3	150
"	"	"	"	7	135	"	"	"	"	4	150
"	"	"	"	8	117	"	"	"	"	5	150
"	"	"	"	9	110	"	"	8	4	6	150
"	"	"	"	10	110	"	"	"	"	7	135
"	"	"	"	11	110	"	"	"	"	9	96
"	"	"	"	12	110	"	"	"	"	10	100
"	"	"	2	13	110	"	"	"	"	11	100
"	"	"	"	14	125	"	"	"	"	12	100

택지명	재 산 의 표 시				평 수	택지명	재 산 의 표 시				평 수
	지구명	일	구 획	호			지구명	일	구 획	호	
여의도	주 거	8	2	13	100	여의도	주 거	8	4	9	100
"	"	"	"	14	100	"	"	"	"	10	100
"	"	"	"	15	90	"	"	"	"	11	100
"	"	"	"	16	70	"	"	"	"	12	100
"	"	"	3	1	96	"	"	"	"	13	108
"	"	"	"	2	100	"	"	"	5	1	96
"	"	"	"	3	100	"	"	"	"	2	100
"	"	"	"	4	100	"	"	"	"	3	100
"	"	"	"	5	100	"	"	"	"	4	100
"	"	"	"	6	100	"	"	"	"	5	100
"	"	"	"	7	96	"	"	"	"	6	100
"	"	"	"	8	96	"	"	"	"	7	96
"	"	"	"	9	100	"	"	"	"	8	96
"	"	"	"	10	100	"	"	"	"	9	100
"	"	"	"	11	100	"	"	"	"	10	100
"	"	"	"	12	100	"	"	"	"	11	100
"	"	"	"	13	100	"	"	"	"	12	100
"	"	"	"	14	96	"	"	"	"	13	100
"	"	"	"	1	96	"	"	"	"	14	98
"	"	"	"	2	100	"	"	"	"	1	96
"	"	"	"	3	100	"	"	"	"	2	100
"	"	"	"	4	100	"	"	"	"	3	100
"	"	"	"	5	100	"	"	"	"	4	75
"	"	"	"	6	90	"	"	"	"	5	75
"	"	"	"	7	80	"	"	"	"	6	70
"	"	"	"	8	96	"	"	"	"	7	96
						"	"	"	"	8	100
						"	"	"	"	9	100
						"	"	"	"	10	80
						"	"	"	"	11	80
						계	106 필지				11,758 평

사 령

◎ 1972. 6. 22.

총 무 과 국가비서 (4 갑) 김 위 태
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

총 무 과 국가비서 (4 갑) 장 옥 수
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

이 호 열

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

세정과 근무를 명함

정 상 조

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

개량과 근무를 명함

박 장 근

지방비서 (4 급갑류 기술담당)

에 임함

2 호봉을 급함

총무과 겸 환경과 근무를 명함

단 겸무청 근무를 명함

◎ 1972. 6. 23.

서대문구보건소 지방의무기좌 백 은 석
보건지도과장

시보 근무를 명함 (72.6.1 ~ 7.31)

지방의무기좌에 임함 (72.8.1)

3 호봉을 급함

지하철건설본부 조 건 부 김 홍 석
지방전기기좌

시보 근무를 명함 (72.6.17 ~ 8.16)

지방전기기좌에 임함 (72.7.17)

3 호봉을 급함

중 구 지방행정서기 박 재 길
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 2 호의

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

총 로 구 지방행정서기 박 정 인
수도사업소
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 2 호의

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

총 로 구 지방행정서기보 김 대 원
수도사업소
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 2 호의

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

용 산 구 지방행정서기보 김 봉 태
수도사업소
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 2 호의

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

동 대 문 구 지방토목기원 백 운 길
수도사업소
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 2 호에

의거 파면에 처함

개 량 과 지방행정주사보 김 용 찬

동대문구 근무를 명함

구획정리제 1 과 조 건 부 홍 성 구
지방토목기원보

복직을 명함

종로구 근무를 명함

공 입 과 지방기계기원보 조 경 식

복직을 명함

마포구 근무를 명함

민 영 란

조건부 지방보건기원보에 임함

마포병원 근무를 명함 (임상
병리사)

서울특별시장